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8.11.)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으로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상에 질병관리청 추가(안 제4조)

정부조직법 개정(’20.8.11.)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함

나. 재난안전통신망법 관련 조문 삭제(안 제43조의12)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21.12.9.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8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인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상청 및 산림청”을 “기상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3조의1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02호 중 “남서울경전철”을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의2 제103호를 제10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4호(중전의 제103호) 전단 중 “제102호”를 “제103호”로 한다.

103. 서해철도주식회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 ----- ----- -----.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u>기상청 및 산림청</u>	1. ----- ----- ----- ----- <u>기상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u>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안전통신망”이라 한다)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u>	<u><삭 제></u>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u>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u>	

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④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 수집·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4124